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외장

제27호 2016. 6. 24(금)

고 시

- 남원시고시 제 2016-91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1
- 남원시 고시 제 2016-95 호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
- 남원시 고시 제 2016-96 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6-814 호 도로지정공고 8
- 남원시 공고 제 2016-811 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1건 입법예고..... 9
- 남원시 공고 제 2016-819 호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4
- 남원시 공고 제 2016-830 호 남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시송달 공고 49

회 람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 고시 제2016 - 91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장안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6. 15.

남 원 시 장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
2. 사업지구의 명칭 : 장안지구
3. 사업위치 :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1번지 외평마을 일원
4. 사 업 량 : 520필지, 224천㎡
5. 대행업무
 - 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일필지조사
 - 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지적재조사측량

남원시 고시 제2016 - 95호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남원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7)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6. 6. 24.

1. 사업의 종류 : 남원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시설명	위 치	사업규모	시행자	주요내용	비고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자동차 정류장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91-5번지 일원	24,000m ²	남원시장 (교통과)	화물차-169대 자동차-50대 주차장 조성	남원시 고시 제2015-96호 (2015.11.2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시장(교통과)
 - 나.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 2016. 12. 31.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따로붙임
8. 관계도서 : 실음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공사명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35,817	24,000						
1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66-8	잡종지	293	293	국방부		-	-	-	
2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4-0	잡종지	2,029	2,005	국방부		-	-	-	
3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5-0	잡종지	10,437	9,302	국방부		-	-	-	
4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83-1	잡종지	231	231	국방부		-	-	-	
5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82-2	잡종지	2,314	2,314	국방부		-	-	-	
6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82-5	잡종지	10	10	국방부		-	-	-	
7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85-1	잡종지	165	165	국방부		-	-	-	
8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88-0	잡종지	5,695	551	국방부		-	-	-	
9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90-1	잡종지	701	420	국방부		-	-	-	
10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91-5	잡종지	658	497	국방부		-	-	-	
11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92-1	잡종지	1,071	69	국방부		-	-	-	
12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92-2	잡종지	380	104	국방부		-	-	-	
13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93-0	잡종지	1,749	926	국방부		-	-	-	
14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94-1	잡종지	555	555	국방부		-	-	-	
15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94-2	잡종지	30	30	국방부		-	-	-	
16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94-3	잡종지	7	7	국방부		-	-	-	
17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94-4	잡종지	7	7	국방부		-	-	-	
18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95-1	잡종지	2,316	2,316	국방부		-	-	-	
19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96-2	잡종지	1,255	1,255	국방부		-	-	-	
20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97-2	잡종지	1,016	1,009	국방부		-	-	-	
21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98-6	잡종지	162	62	국방부		-	-	-	
22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99-1	잡종지	2,724	35	국방부		-	-	-	
23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14-1	구거	426	280	국방부		-	-	-	
24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14-2	구거	439	439	국방부		-	-	-	
25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14-9	구거	907	878	국방부		-	-	-	
26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16-1	도로	179	179	국방부		-	-	-	
27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16-4	도로	61	61	국방부		-	-	-	

남원시 고시 제2016 - 96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 도시과(☎ 063-620-645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06월 24일

남 원 시 장

1. 남원 도시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955	8	집산 도로	159	갈치동 산5-1 도	갈치동 430잡	일반 도로	-	금회	사업시행자 - 남 원 시: L=69m B=8m - (주)풍년농장: L=90m B=8m

■ 결정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소로 2-955호선	노선신설(진입도로) L=159m, B=8m	· 주변 농경지 이용 및 단지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노선 신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34	풍년농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	남원시 갈치동 430-1번지 일원	-	증)68,937	68,937	금회	

■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m ²)	결 정 사 유
신설	34	남원시 갈치동 430-1번지 일원	68,937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기존 축사를 철거 후 개축하는 사업으로,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으로 결정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단지 내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함)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 적(m ²)		
-	A	27,184	A-1	남원시 갈치동 430-1잡 일원	21,557	축사시설용지	
			A-2	남원시 갈치동 430-3잡 일원	888	주차장	
			A-3	남원시 갈치동 430-3잡 일원	359	하수처리시설	
			A-4	남원시 갈치동 430-3잡 일원	1,165	저류시설	
			A-5	남원시 갈치동 430-2잡 일원	3,215	완충녹지	
	B	31,550	B-1	남원시 갈치동 432-3목 일원	24,038	축사시설용지	
			B-2	남원시 갈치동 산89-4임 일원	1,726	축사시설용지	
			B-3	남원시 갈치동 산89-2임 일원	5,786	완충녹지	
	C	1,073	C-1	남원시 갈치동 432목 일원	485	축사시설용지	
			C-2	남원시 갈치동 432목 일원	588	완충녹지	
	D	1,901	D-1	남원시 갈치동 산89-4임 일원	777	축사시설용지	
			D-2	남원시 갈치동 432목 일원	1,124	완충녹지	
	E	631	E-1	남원시 갈치동 산91-14임 일원	631	완충녹지	
	합 계		62,339	-	-	62,339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A	A-1	남원시 갈치동 430-1잡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 공동주택 중 라)기숙사(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 제3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하)사무소(바닥면적 500㎡ 미만) - 제18호 창고시설 중 가)창고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사, 나)가축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이하
					높이(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 이하(5층 이하)
					배치·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시 건축 조례 [별표4] 1m 이상
	A-3	남원시 갈치동 430-3잡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이하
					높이(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m 이하(4층 이하)
					배치·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시 건축 조례 [별표4] 1m 이상 			
B	B-1	남원시 갈치동 432-3목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호 창고시설 중 가)창고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사, 나)가축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이하
					높이(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 이하(5층 이하)
					배치·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시 건축 조례 [별표4] 1m 이상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B	B-2	남원시 갈치동 산89-4 임일원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8호 참고시설 중 가)참고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나)가축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이하
					높이(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m 이하(4층 이하)
					배치·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시 건축 조례 [별표4] 1m 이상
C	C-1	남원시 갈치동 432목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8호 참고시설 중 가)참고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나)가축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이하
					높이(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m 이하(4층 이하)
					배치·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시 건축 조례 [별표4] 1m 이상
D	D-1	남원시 갈치동 산89-4 임 일원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18호 참고시설 중 가)참고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나)가축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이하
					높이(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m 이하(4층 이하)
					배치·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시 건축 조례 [별표4] 1m 이상

**2. 남원 도시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 실음생략**

◎ 남원시 공고 제 2016 - 814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폭(m)	도로 폭(m)	도로 면적(m ²)	이해관계인		
							지 번	면적 (m ²)	토지소유자
2016-1 2	남원시 어현동 산 22(임)	김*자	2016-건축과- 신축신고-238	250	3	908	남 원 시 어 현 동 421-2, 724, 421-7, 418, 산 19, 산 20, 419, 산 21, 산 22	908	최*영 국유지 김*상 유*수 공*석 황*대, 황*두 국유지 하*현, 이*환 조*선

남원시공고 제2016-811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시민이 시정에 관해 고충민원의 처리와 시정요구 등이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여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설치 운영 목적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4조)
- 나. 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11조)
- 다. 전문가 자문 및 운영상황 공표 (안 제13조, 안 제14조)
- 라. 인사상 우대 및 활동비 지급 (안 제16조, 안 제 17조)

3. 참고사항

-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7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남원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남원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4조(남원시의 의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원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
-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결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고충민원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남원시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단,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실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시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행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 전문인으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및 그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포할 때에는 개인 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상 우대)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경력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7조(활동비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3조에 따른 전문가에게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공고 제2016-811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회의의 공개,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4조)

다. 조사의 방법 및 실지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6조)

라. 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의견표명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마.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2조)

3. 참고사항

가.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7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781),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감사실(☎063-620-6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규칙 제 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조례·규칙·시책 등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제3조(위원의 책무) ① 위원은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며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재임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공무원의 책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은 위원의 지위를 존중하고,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장 교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고충민원에 관한 심의·의결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의결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어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다음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 하여야 한다.

1. 소송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2. 다른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4.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9조(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적어 위원회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사람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

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 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신분증의 휴대)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단순

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시장 및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적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7일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실지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해 소속 직원에게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및 소속 기관 등의 장 또는 신청인 등에게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1. 관계부서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2. 관계부서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제1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합의 권고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 ②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조정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 주재한다.
- ④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시장,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게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조정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고충민원의 내용
-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 3.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의 회신기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 3.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의 회신기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권고나 의견 표명인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 및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결과에의 통보) ① 제18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견 표명서를 붙여야 한다.

제23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① 위원회는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상황의 통보 및 공표) 조례 제14조에 따른 운영상황은 매년 12월 31일까지의 신청건수, 조사건수, 권고·의견표명 및 시정 등의 조치,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시에 통보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관인) 위원회에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제2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축 장

주 소 :
성 명 :
위축기간 : ~

귀하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고 충 민 원 신 청 서

접 수 번 호	제 - 호	접수년월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이유			
피 신청인 (관계기관)	기 관 국(과)				
민 원 명					
신 청 이 유					
민원대상의 사실 또는 행정처분					
그 밖에 참고사항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 절차의 신청유무 :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p>※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조사계)에서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 성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p>					
<p>※ 유의사항 ①이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p>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청구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서면 접수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청구 자격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청구일 부터 조사 종료일 및 조사관련 문서 보존연한까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조사청구 신청자 및 연서자의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

접 수						제 목 (내용요약)	조 치 결 과						이 첩		의 결		신청인에 통지일	확인
번호	월일	신 청 인					소관부서 접수				조치결과		월일	부서명	월일	의결 내용		
		성 명	주 소	연락 처	성별		월일	부서명	직	성 명	월일	조치내용 (요약)						

<보관용> 시 민 고 충 민 원 접 수 증				
접수번호	제 - 호			
신 청 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민 원 명				
접 수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음.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비 고				

<교부용> 시 민 고 충 민 원 접 수 증				
접수번호	제 - 호			
신 청 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민 원 명				
접 수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회(620-6972)에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대 리 인 신 청 서

① 신청인 성 명(명칭) : 외 명
주 소 :
전 화 : (이동전화)

② 대리인 성 명 :
주 소 :
전 화 : (이동전화)

③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④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⑤ 대리인의 자격(증빙자료 붙임)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고충민원 신청 취하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민원 내용				
취하일자				
취하사유				
<p>신청인 ○○○은(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민원신청서를 취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성명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장 귀하</p>				
취하처리 담당	소속 :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전 면)

60mm × 90mm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 style="margin: 0;">3×4</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사 진</p>	<h3 style="margin: 0;">신 분 증 명 서</h3> <p style="margin: 5px 0 0 100px;">성 명 :</p> <p style="margin: 5px 0 0 100px;">생년월일 :</p> <p style="margin: 5px 0 0 100px;">제 호</p> <p style="margin: 10px 0 0 0;">위 사람은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임을 증명함.</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0 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 0 0 0;">남 원 시 장</p>
---	---

(후 면)

<p>◎ 우리시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p> <p>◎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p> <p>◎ 이 증을 제시하면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물론 일반시민들께서도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원 시 장</p>
--

[별지 제8호 서식]

시민고충처리심의 출석통지서

수 신 :

접 수 번 호	
신 청 인	성 명 : 주소 :
피 신 청 인	기관 국(과)
민 원 명	
의 견 진 술 요 구 사 항	

1. 위 고충민원 심의에 필요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 . . 오전(오후) :

나. 장 소 :

2.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출석시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십시오.

문의할 곳 : 주소

전화번호 :

[별지 제9호 서식]

합 의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년 월 일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조 정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	년 월 일 :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결 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	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	기관	국(과)
민 원 명		
신 청 이 유 (요 약)		
주 문		
이 유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12호 서식]

처 리 결 과 통 보 서

(처리, 기각)

수 신:

접 수 번 호		민 원 명	
신 청 인	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	기 관		국(과)
붙 임	의결서 사본 1부		
<p>1.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처리,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2.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3.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p> <p>4. 귀하의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p>			
문의할 곳 :		전화번호 :	

[별지 제13호 서식]

의견표명서

(시정조치 권고, 제도 등 개선권고)

수신:

접 수 번 호		민 원 명	
신 청 인	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	기 관	국(과)	
붙 임	의결서 사본 1부		

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 하였기에, 귀 기관에서 의결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견 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 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결과 통보 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위원회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공고 제2016 - 819호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과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중복규제 조항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2. 주요내용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조례에 중복 규제된 시설 사용 계약의 해약 조항 삭제 (안 제5조)
-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 상실로 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조항 삭제 (안 제8조)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시설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95

전라북도 남원시 양림길 43 춘향문화 예술회관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89) 및 직접방문 등가. 관계법령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시설사업소(☎063-620-5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한”을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조례 제2조에 의한”을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 때”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5일전까지”를 “5일전까지”로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예술회관시설”을 “춘향문화예술회관시설”로, “의하여 비치”를 “따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어려울시는 소요경비를 시장에게 위탁하여 복구”를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에게 복구비용을 납입하고 시장이 원상복구를 대행”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료 감면신청)”을 “(사용료 감면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로 한

다.

제7조 제1항 중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시장 임의로”를 “시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전기료를”을 “전기요금을”로 한다.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 2016-8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남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하고자 협의문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남 원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남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나. 사업시행자 : 남원시장
- 다. 사업장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320-1번지 일원

2. 공고 내용

- 가. 공고기간 : 2016. 6. 24. ~ 2016. 7. 8.
- 나. 보상협의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 산업용지조성담당
- 다. 보상방법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절차를 거친 후 계좌입금

3. 공시송달 내역 : 별첨

4. 기타

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공고기간 내 협의를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의 규정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이며,

다. 재결 결과에도 협의를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규정에 따라 공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 산업용지조성담당 (☎ 063-620-6459, 647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상 협 의(공 시 송 달) 공 고

남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연번	행정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감정기관			평균단가(원)	총보상액(원)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백재	나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226-1	226-5	전	8,538.0	1/8	21,000	20,500	20,750	22,145,430	이*엽	임실군 둔남면 둔거리 ***				
							21,000	20,500	20,750	22,145,430	이*진	임실군 둔남면 둔거리 ***				
							21,000	20,500	20,750	22,145,430	이*의	서울 구로구 시흥동 4-***				
							21,000	20,500	20,750	22,145,430	이*식	임실군 둔남면 둔거리 ***				
							21,000	20,500	20,750	22,145,430	이*한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				
2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226-4	226-10	전	1,843.0	1/8	20,600	20,100	20,350	4,688,130	이*엽	임실군 둔남면 둔거리 ***				
							20,600	20,100	20,350	4,688,130	이*진	임실군 둔남면 둔거리 ***				
							20,600	20,100	20,350	4,688,130	이*의	서울 구로구 시흥동 4-***				
							20,600	20,100	20,350	4,688,130	이*식	임실군 둔남면 둔거리 ***				
							20,600	20,100	20,350	4,688,130	이*한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				
3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산116-4	산116-13	임	935.0	1/8	17,000	16,100	16,550	1,934,280	이*엽	임실군 둔남면 둔거리 ***				
							17,000	16,100	16,550	1,934,280	이*진	임실군 둔남면 둔거리 ***				
							17,000	16,100	16,550	1,934,280	이*의	서울 구로구 시흥동 4-***				
							17,000	16,100	16,550	1,934,280	이*식	임실군 둔남면 둔거리 ***				
							17,000	16,100	16,550	1,934,280	이*한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				
4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286-1	286-4	답	6.0	18,400	19,900	19,150	114,900	정*택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					
5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286-3	286-3	답	51.0	15,000	15,000	15,000	765,000	정*택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					
6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320-12	320-14	전	14.0	24,100	23,500	23,800	333,200	지*규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					
7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산29-1	산29-1	도	274.0	5,800	5,500	5,650	1,548,100	지*규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					
8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1001-6	1001-6	답	927.5	1/3	19,600	19,300	19,450	6,013,290	박*희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				
						1/3	19,600	19,300	19,450	6,013,290	박*우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				
						1/3	19,600	19,300	19,450	6,013,290	박*영	남원시 대산면 옥율리 ***				
9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200-37	200-37	임	894.0	1/4	21,300	21,300	21,300	4,760,550	박*순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636-**	박*규	서울시 도봉구 방문1동 349-2 광진빌라 에이동 ***호	가압류	
						1/4				21,300	4,760,550	정*선	서울시 도봉구 장동 609-***	정*영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	가압류
10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296-6	296-6	도	193.0	12,000	11,500	11,750	2,267,750	김*영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					
11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297-5	297-14	구	13.0	8,800	8,200	8,500	110,500	이 *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					
12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297-12	297-12	구	9.0	8,200	8,200	8,200	73,800	이 *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					
13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730-4	730-4	도	3.0	16,800	16,800	16,800	50,400	이*준	임실군 둔남면 동촌리				미등기	
14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752-1	752-1	도	132.0	8,000	7,900	7,950	1,049,400	이*철	임실군 둔남면 용두리				미등기	
15	임실군 오수면 용두리	산7-8	산7-9	임	232.0	1/4	26,900	26,400	26,650	1,545,700	이*재	임실군 둔남면 용두리 ***				
						1/4	26,900	26,400	26,650	1,545,700	이*재	임실군 둔남면 용두리 ***				
						1/4	26,900	26,400	26,650	1,545,700	이*재	임실군 둔남면 용두리 ***				
						1/4	26,900	26,400	26,650	1,545,700	이*재	임실군 둔남면 용두리 ***				
16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산7-2	산7-5	임	102.0	1/8	20,300	19,700	20,000	255,000	김*영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	남원시		압류	
17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	296-2	296-2	도	456.0	8,000	7,900	7,950	3,625,200	김*관	남원시 동중동 ***					